
■ 목 차

· 공적 제자도를 실천합시다. □ 문시영 목사(남서울대학교)
3p

· 퇴직소득 흐름과 과세 구조 □ 최호운 회계사(삼화회계법인)
6p

· 참고자료 소득세법 법률개정안 관련 자료
15p

· 단체소개
16p

■ 발표자 소개

발표자 소개

발표자 1



문시영 교수

남서울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
전(前) 소망교회 청년부 교육목사
송실대학교 철학박사

발표자 2



최호윤 회계사

공인회계사 (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순서1

공적 제자도를 실천합시다.

문시영(남서울대, 기독교윤리)

I. 가이사의 것, 성실하자.

잘 아시는 것처럼, 논리학의 기본은 전제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회자에게 합당한 퇴직 예우가 필요하다는 기본 전제를 잊지 말고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이 전제를 놓치면, 비난과 정죄와 심판으로 흐를 뿐입니다. 최근 어느 인터넷 기사 제목에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 기습처리 시도에 시민단체 준엄한 심판’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선 전에 논란이 되었던 이 사안이 총선 이후에 더구나 20대 국회임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우려됩니다.

만에 하나, 목회자와 개신교를 시민성이 떨어지고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유감입니다. 목회자의 퇴직에는 그에 합당한 예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재직기간의 수고와 헌신을 존중받아야 할 자격이 있으며, 그리고 퇴직 목회자도 노후를 꾸려가야 할 생활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합당함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목회자 납세 자체에 관한 논의가 제1라운드였다면, 퇴직소득에 관한 논의는 제2라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과연 목회자 납세가 가이사의 것에 속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결론이 났고, 목회자들과 교회가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는 ‘당하는 개혁’이 아니라 ‘책임적 응답’이 되게 하자는 점이었습니다. 목회자 납세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2라운드는 가이사의 것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 것인가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1월 이후 근속기간에 전체기간을 나눈 비율을 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대상 금액이 크게 줄어들고 심지어 2018년 퇴직해 원천징수했다면, 초과납부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이 많은 대형교회일수록 혜택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오늘 함께 하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특혜이고 기습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이사의 것으로 정해진 이상, 성실납세가 답입니다. (목회자들께서 이 제안에 대해 저에게 너무 나이브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 연구비 받았다고 종합소득세까지 내고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번 논란을 ‘절세전략’ 혹은 ‘세 테크’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시민사회가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탐욕의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요컨대, “성실납세를 선언하고 책임적인 자세 보이자”고 한국교회에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2. 하나님의 것, 헌신하자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반부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헌금을 강조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겠습니다. 본문에 대해 신약학자들은 ‘안티테제 아포리즘,’ ‘더블 디알렉틱스,’ ‘카운터 레토릭’ 등등 해석이 분분합니다. 세금 문제 합법화 구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대등하게 여기는 문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이사의 것에 대한 논란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소홀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이란, 헌금을 지칭하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에 헌신하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적 제자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적 제자가 아니라 공적 제자로서의 정체의를 가지고 기독교신앙의 공공성을 구현하자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도전은 ‘번영의 복음’입니다. 번영을 위한 복음, 번영의 신학을 넘어서야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번영의 복음에 길들여진 탐욕의 사람들로 비춰지게 해서는 공적 제자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소득 과세의 특혜논란은 어느 사이에 퇴직소득의 적정성 논란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에 관한 논의가 목회자의 퇴직소득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말도 나오기 마련이고 심지어는 탐욕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목회자와 교회의 시민성 부족의 문제로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란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읽어내는 책임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제자도, 공적 제자도를 구현하는 기회로 삼자는 뜻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종교인 과세에 성실하게 대응하여 사회적 신뢰

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하시더군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교회가 성실 납세를 하면 과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싶군요. 그것만으로는 회의적입니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공공성을 구현하는 공적 제자도에 관심하자는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퇴직소득 과세 문제에 한국교회는 공적 제자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한국교회가 시민사회에 기여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코로나 과정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퇴직소득 문제를 기습처리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비난과 정죄와 심판을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시민의 기대도 중요하고, 시민사회에서 욕먹지 않도록 눈치껏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적으로 공적 제자도를 실천하여 복음의 사회적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공적 제자도의 실천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교회는 변영의 복음을 넘어, 복음의 사회적 증인이 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퇴직소득 흐름과 과세 구조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1 들어가는 글

정성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퇴직소득세관련 세법 개정안이 지난 해 4월 국회 법사위에서 반려된 이후 7월 17일 법안심사2소위에서 통과되었다가 다시 올해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 되고, 지금은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 종료기간을 앞두고 있다.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종교인 퇴직소득세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단지 소수의 국회내 논의로 마무리하기엔 놓치는 점이 무엇인가를 짚어 보아야만 할 상황이다. 신학적 검토와 논의가 기독교 내부의 관점이라면 일반 사회가 바라보는 실정법 차원에서 종교인퇴직금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은 교회가 사회와 소통 해야할 통로를 파악할 수 있다.

2 퇴직금제도의 변천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보호관점에서 그동안 여러 형태의 법규정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1953: 근로기준법제정(임의 제도로 퇴직금제도 도입)
- 1961: **퇴직금지급제도 시행**(30인 이상 사업장 강제 적용)
- 1975: 16인 이상 작업장 강제 적용
- 1977: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도입**
- 1987: 10인 이상 사업장 강제 적용
- 1989: 5인이상 사업장 강제 적용
- 1993: **퇴직전환금 납부 시행**(국민연금으로 납부) <-1999.3까지 시행
- 1997: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도입**
- 2000: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폐지**

- 2000.12: 비과세 연금소득을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연금납부액을 소득 공제(비용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 (2002년부터 적용)
- 20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퇴직연금제도 도입, DC/DB/IRP)
- 2010: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 2010.12.31: 퇴직보험(신탁) 폐지
- 2015.1: 퇴직소득공제 방식을 40%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 전환
- 2016: 신설사업장 퇴직연금제 도입 의무화
- 2022(예정):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퇴직금 재원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여 지급하던 단계에서 실질적인 자금 확보할 목적으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유도하다가, 다시 회사의 경영 또는 자금 사정에 전혀 영향 받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연금제도 중심으로 전환해 가는 중이다.



3 퇴직금의 성질

가. 퇴직금 성격

퇴직금의 성질에 관해서는 1) 근로자가 기업에 장기간 근로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공로보상설', 2)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기업이 지급하는 급부로 보는 '생활보장설', 3)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임금후불설'이 있으며 학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1].

나. 퇴직불입금을 발생한 운용수익 과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불입연도에 과세하는 방식'(불입한 원금을 본인이 나중에 받는 관점이므로 불입한 원금의 이자소득 등에 발생한 추가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과 '수령연도에 과세하는 방식'(불입한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하고 수령한 금액을 소득으로 과세)으로 나누어지며, 현행세법은 수령연도에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임금을 (퇴직)연금으로 미리 적립하였다가 나중에 수령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연금을 불입하는 시점에서는 비용으로 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소득이 회수/수령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현행 (퇴직)연금소득 과세 체계가 연금저축 이자소득에 과세하는 논리보다 구조적으로 더 타당하다.

4 퇴직금 관련 규정

가. 법정 지급 의무

① 지급요건

일반 회사 또는 법인(法人)의 직원들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2],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

② 지급 대상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부교역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의 판례들이 있으며, 단순한 종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이다', '근로자가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관계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들의 경우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니며,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4]하므로 위임자인 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가 결정한 내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5].

담임목회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임관계를 준용하더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담임목회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부교역자들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다. 과세대상 퇴직소득의 범위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으로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6], 3)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7]을 퇴직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교회가 지급하는 사유가 퇴직을 원인으로 하면 퇴직금,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퇴직공로보상금, 전별금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금 지급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르되, 특정한 개인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또는 종교인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임원[8]의 경우 2011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정관 규정 또는 총회 결의에 따른 자율적인 누진을 적용이 가능하나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3배수로 최대 누진이 제한되며[9],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또는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와는 별도로 은퇴(퇴직)한 원로목회자에게 교회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한다[10].

5 퇴직금 소득세 계산구조

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에 관한 규정은 2013년과 2016년 두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2016년 개정내용은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반영되며, 환산 배수를 5배수에서 12배수로 상향한 것은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며 개정된 내용이다.

갑자기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2016년 개정 이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세액과 개정 이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세를 각각 계산한 후 연도별로 가중 평균하는 과도기적 중간 형태를 거쳐 2020년부터는 개정세법기준으로만 적용한다.



2019년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방식에 따른 산출세액을 20%로 적용하고, 개정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80%를 적용하며, 퇴직금 지급 시기가 2020년 이후인 경우는 퇴직금 전액을 개정 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나 퇴직(은퇴)이후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교회가 은퇴(퇴직)한 원로 목회자의 종교활동과 관련한 생활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종교인소득 과세 구조에 따라 교회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목회자 개인이 수령한 다음해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6 논의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문제점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이유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관련하여 2001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2002년부터 발생하는 퇴직금(연금)만 퇴직소득으로 포함하여 과세한다는 사례^[11]를 2018년 이후 발생분만 퇴직소득으로 보겠다는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 사례

로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의 이유에서 입법취지의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가. 2017년 이전에도 종교인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었다.

종교인이 수령하는 사례비는 과세제외소득이 아니라 기존 세법규정에서도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2017년 이전에 수령한 사례비가 비과세 소득이라는 이유로 2017년 근속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논리에 타당성이 없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신설해서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2018년 시행 개정 세법은 기존에 과세하지 않던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설한 규정이 아니라, 그 동안 근로소득에 해당한 종교인의 소득을 종교인들의 신념에 따라 본인의 선택으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개정 세법의 입법 취지다. 이는 소득세 법상 수령하는 소득의 성질에 따라 소득을 분류하는 과세소득 분류체계에 대한 예외적 입법이었다.

그동안 종교인 소득 과세여부에 대한 개별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원과 세무당국이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과세대상 소득인 것으로 판단한 점은 종교인이 수령하는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 아니었음을 판례와 유권해석으로 천명해 온 것이다.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국민개세주의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2조에서는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국법인 등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이때 납세의무자의 직업이 종교인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달리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성직자이거나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011구합36838, 2012년 8월 16일)

교단헌법 시행세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퇴직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등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4중0993, 2014년5월9일)

'국심2003중2325'(2003.12.1.), '소득46011-10122'(2001.2.14.), '소득세과-2323'(2008.7.11.) 또한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이였다.

따라서, 2017년까지 종교인이 수령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이었음을 전제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입법 의의가 없다고 하겠다.

나. 공적연금관련 개정사항 입법취지

2012년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 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니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특정기간 이후에 수령하는 퇴직금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입법사례를 유사한 사례로 인용하고 있으나 연금소득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간주하는 것과 이번 발의안은 성격을 달리 한다.

200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과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을 퇴직소득의 종류로 신설하였다[12].

이는 소득세 계산시 소득(비용)공제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각종 연금의 기여금 불입액전액을 소득공제함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비과세하고 있는 연금 소득을 점진적으로 과세로 전환하여 소득 종류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을 실제 지급 받을 때 과세하여 소득 발생 시기와 과세 시기로 일치시키자는 취지로 개정한 내용이다.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본인 부담분에 대해 불입시 비용으로 공제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수령하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용자부담분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하자는 취지로 연금제도 개편에 따른 세법규정 보완 절차에 따른 개정이다.

개정 세법에 따라 이미 불입한 동일한 재원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연금으로 주기적으로 나누어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분류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퇴직과 무관했던 국민연금 일시금수령액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연금제도 변천에 따라 퇴직금과 무관했던 연금일지라도 2002년 이후 불입하는 연금을 대상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으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교인퇴직소득세와는 출발선이 다른 사항이다.

7 나가는 글

세금은 공동체 운영경비를 구성원이 부담하는 것이기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것이 직접 세이든 간접세이든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세금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는 구성원들의 합의로 부담원칙을 정하며, 구성원간 차별없는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경이 세금 계산 구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으면 세금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덜어지겠으나 성경에서 무슨 세금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내라고 하는 언급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없다. 다만,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두가지 기준이 충족되는 방향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라고 요구하신다.

세금에 대해 고민하면서 두가지를 늘 물어본다

-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인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의 가치를 지키는 것인가?
- 세금을 내면서 종교인들이 차별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는가?

사역(일)을 한 기간에 대해 지역교회로부터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인가? 국민으로서의 형평성을 침해받는 차별적인 대우인가?

2천년전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챙기지만 정작 더 중요한 정신인 의(justice)와 인(mercy)과 신을 버렸다고 질책한 예수님의 메세지가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규정으로 합리화 시키는 시도는 구약의 율법주의안에서 맴도는 것이다.

법이란 형식적 테두리안에서 사랑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은 고르반이란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것이다.

[1] 원천징수 이론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6, pp929~930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4] 상법 제382조 제2항

[5] 민법 제686조 제1항

[6]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7]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

[8]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회장, 대표, 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업무집행사원, 감사 등이 해당한다.

[9]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10]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5항

[11](공무원 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2002년1월1일 이후 납입하였거나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받는 일시금만 퇴직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 2항)

[12]2000년 12월 29일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 참고자료

1. 종교인 퇴직소득세법 관련 경과

- ① (19.02) 정성호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 2018475]’ 대표 발의.
- ② (19.04)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됨.
- ③ (19.07)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의결.
- ④ (20.03.04)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의원 등의 반발로 계류됨.
- ⑤ (20.05 예정) 제 20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개정안 자동 폐기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18475]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 관련 종사자 퇴직소득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하여 종교 관련 종사자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3.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의 실정법적 문제점은 일반적인 퇴직소득의 과세시점은 퇴직소득의 수입시점인 점, 일반근로소득과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는 점과 동 개정안으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되는 자가 소수의 고소득 종교인인 점 등이 있습니다.

4. 동 법률개정안 관련 국회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K9K0H2X0A1L1A0Q1B5T1N8S9F4P1&ageFrom=20&ageTo=20

■ 단체소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한국교회 구조회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재정운영에 있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건강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교육하고 배포하고 실천하여 교회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가는 운동을 합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문의

전화: 02-6951-1391

팩스: 0505-231-2481

홈페이지: www.cfan.or.kr

이메일: cfan05@hanmail.net

● 목적(사명)

한국교회가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온전한 교회로서 대사회적 신뢰를 받도록 한다.

● 운동전략 및 실행계획

1. 연구와 개발 : 성경적 교회재정관 정립, 한국교회 교회재정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모범사례 발굴, 대안제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2. 배포 및 홍보 : 홈페이지 운영, 재정사용 원칙제시, 재정정관 및 조례 보급, 재정관리 매뉴얼화 및 책자보급, 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재정담당자 교육
3. 교회현장 운동 : 목회자납세 운동, 재정결산서공개 운동
4. 교육과 컨설팅 : 세미나 및 강좌 개최 및 연구물 발표, 재정문제 상담, 건강한 역할모델 육성